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수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권수정, 김제리, 이병도,
채유미, 채인목, 이호대,
유 용, 봉양순, 최 선,
장상기, 임종국, 권영희 의원
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교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비율 기준이 없어 자칫 자치구 예산배정에 있어 포폴리즘성, 자치구 통제용으로써 교부금 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- 이에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 균형 잡힌 예산배정을 위한 각 호별 비율을 직접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교부 시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정해진 비율을 기준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
- 나. 시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(안 제11조)
- 다. 시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 교부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교부세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: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: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: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를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특별조정교부금자문위원회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조정교부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과 자문 안건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.</p> <p>1.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<u>경우</u></p> <p>2.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·복구·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경우</u></p> <p>3.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경우</u></p> <p>②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1조(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 <u>경우 :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 :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</u>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경우 :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시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 명세를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</u></p>

<신 설>

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(특별조정교부금자문위원회)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조정교부금 담당 국장급 공무원과 자문 안건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○ 특별조정교부금 자문위원회 운영비 ≒ 60,000천원

- 5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자문위원회 운영비 = $\sum_{i=1}^5 (\text{연간비용})_i$

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
- 연간비용 ≒ 3,000천원 × 4회 = 12,000천원

※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9년 시민재난안전 자문위원회 운영 비용 12,000천원을 준용(붙임
참고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분석관(주무관) 김민호

☎ 02-2180-7953

e-mail : waterkim@seoul.go.kr